

인천국제공항 지상조업장비정비시설B 민간투자시설사업

# 실시협약

(제 1 회 변경)

2001. 3. 9



건설교통부  
아시아나지원시설(주)

---

AT IT



# 실시협약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거 대한민국 정부와 아시이나지원시설(주)간에 1997년 12월 23일 체결한 실시협약(이하 구협약이라 칭한다)을 1998년 12월 31일 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1999년 3월 31일 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및 1999년 7월 9일 고시된 '99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의거하여 2001년 3월 9일 다음과 같이 개정 협약한다.

##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목적 및 사업의 범위)


본 협약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동법 시행령 및 수도권신공항 지상조업장비정비시설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지상조업장비정비시설B(이하 지상조업장비정비시설B라 칭한다) 민자유치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대한민국 정부와 아시이나지원시설(주)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리전문회사 :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규정된 감리전문회사로서 본 협약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본 사업의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그 승계인을 포함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 대한민국 법률 제5964호 건설기술관리법을 의미하며, 그 수정, 변경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3. 공사기간 : 본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고 구 협약에 따라 본 시설물의 최초 공사를 시작한 공사착수일로부터 본 시설물의 완공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4. 공사착수일 : 본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고 구협약에 따라 실제 본 시설물에 대한 공사에 착수한 1999년 8월 11일을 의미한다.
5. 공항개항기준일 : 인천국제공항의 개항 예정일인 2001년 1월 1일로서 실제 공항개항일까지 공항개항 지연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일을 의미한다.
6.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대한민국 법률 제5454호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7. 관리운영권 : 본 사업에 대한 정부의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법 및 본 협약에 따라 본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하는 지상조업장비정비시설B시설관리운영권을 의미한다.
8. 대주단 : 자금차입계약상의 채권자단을 의미한다.
9. 사용료수입 : 본 사업시행자가 지상조업장비정비시설B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임대료의 총수입을 의미한다.
10. 민자유치촉진법 : 대한민국 법률 제4773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11. 민간투자법 : 대한민국 법률 제6021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12. 민간투자법시행령 :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6220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13. 본 시설물 : 인천국제공항 지상조업장비정비시설B 시설을 말한다.
14. 본 사업 : 시설사업기본계획에 고시한 인천국제공항 지상조업장비정비시설 B 사업을 의미한다.

15. 본 사업기간 : 본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운영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6. 본 사업시행자 : 본 협약의 당사자인 아시아나지원시설(주)를 본 사업에 관한 본 사업시행자로 하며, 그 적법한 승계인을 포함한다.
17. 본 협약 : 정부와 본 사업시행자간에 체결한 실시협약을 의미하며, 그 수정, 변경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18. 본 협약 당사자 : 정부와 본 사업시행자를 의미한다.
19. 사업계획 : 본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1997. 6. 20.일자로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지상조업장비정비시설B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계획 내용을 의미한다.
20. 사업수익율 : 본 사업에 대해 본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기대수익률에 근거하여 협약당사자간에 협상을 통하여 결정된 기대수익률로서 민간투자기본계획 상의 사용료 등을 산정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등의 현금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사용하는 계수를 말한다.
21. 사업시행자 지정 : 본 사업에 대한 정부의 주무관청인  민간투자법 및 본 협약에 따라 본 사업시행자를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2. 소비자물가변동률 :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조사통계월보에 고시되는 당해기간의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소비자물가변동률이 더 이상 공시되지 않을 경우 협약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다른 지수로 대체된다.
23.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 대한민국법률 제6095호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이하 수촉법 이라 칭한다)을 의미하며, 그 수정, 변경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24. 시공사 : 본 사업시행자로부터 본 사업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25. 시설사업기본계획 :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81호(1997. 3. 13)에 의한 수도권신공항 지상조업장비정비시설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을 의미하며, 그 수정, 변경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26. 실시계획 : 본 사업시행자가 민자유치촉진법 및 본 협약에 따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의 실시계획을 의미하며, 그 수정, 변경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27. 완공일 : 본 사업시행자가 최종설시설계에 부합하도록 본 시설물을 실질적으로 완공하여 본 사업시설의 최종준공 확인을 신청하기 전날을 의미한다.
28. 운영기간 : 본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에 따라 본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가지게 되는 운영개시일로부터 본 협약에 따른 무상사용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29. 운영개시일 : 운영개시일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실제로 사용료 산정이 개시되는 날로 한다.
30. 인천국제공항 : 정부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용유도 일원에 건설중인 신공항을 의미한다.
31. 인천국제공항공사 : 대한민국 법률 제5689호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 존속하는 법인으로서, 구 협약상 신공항건설공단의 재산 및 권한·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고, 본사업과 관련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은 법인을 의미한다.
32. 자금차입 : 본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차입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33. 자금차입계약 : 본 사업시행과 관련한 본 사업시행자와 대주단과의 자금차입을 위한 계약을 의미한다.
34. 정부 : 본 협약의 당사자인 대한민국 정부를 의미한다.
35. 제반공급시설 : 본 시설물과 관련되어 설치될 공동구, 전기, 통신, 가스, 송수, 열공급 등 제반공급(유틸리티)시설을 말한다.
36. 제세공과금 : 본 사업의 시행, 준공, 등기 및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세금 및 공과금과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을 의미한다.

- 37. 총사업비 : 총사업비는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총사업비를 말한다.
- 38. 총선순위채무 : 본 협약의 중도해지시 사업시행자가 자금차입계약(들)에 따라 대주단 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총채무원리금(조기상환수수료 등 포함)을 의미한다.
- 39. 지상조업장비정비시설 B : 항공법시행령 제10조 2호 가목에 규정된 '지상조업장비의 점검.정비 등을 위한 시설'로서 항공기 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지상조업장비의 점검 및 수리작업 등에 사용되는 정비공간 및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 40. 지상조업장비정비시설 사용료 : 본 사업시행자가 지상조업장비정비시설B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민간투자법상의 사용료로서 지상조업장비정비시설B 시설물의 임대료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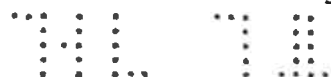
**제3조 (협약의 구성)**

지상조업장비정비시설B 민자유치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약서는 본 실시협약서 및 본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부속서류 포함)와 기본설계도면으로 구성된다.

## 제 2 장 기 본 약 정

**제4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정부는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시행령,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본 협약에 따라 아시아나지원시설(주)를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관리운영권을 설정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및 권한과 권리를 지정, 승인, 설정 및 부여한다.







- ① 본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규 및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며, 본 사업의 시행과 관리운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협약 및 관련법규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는 사업기간동안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권한과 권리를 철회, 취소, 박탈 또는 변경하지 못한다.

## 제 3 장 실시절차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제9조 (총사업비)

- ① 총사업비는 본 협약에 따라 추후 변경되지 않는 한, 1997년 1월 1일 불변가 기준 3,900백만원으로 한다. 그 내역은 별첨 부록 2와 같다.
- ② 총사업비중 공사비는 2,874백만원으로 하되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따라 제출할 공사비 산출근거에는 공종별 수량 및 단가가 명기된 공사비 내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 10조 (총사업비의 변경)

- ① 지상조업장비정비시설B 건물외벽 중심선 3 m부터 주관로까지의 상·하수도 시설, 우수관로시설, 전기시설, 도시가스시설, 열공급시설 등 제반공급시설(유틸리티)공사를 본 사업시행자 또는 본 사업시행자 이외의 자가 시행하여 본 지역에서 함께 사용하여야할 시설의 설치자와 배분하여 본 사업시행자가 분담키로 협의 결정할 경우에는 그 분담금액을 총사업비에 반영한다.



- ② 본 협약체결이후 본 협약에서 인정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관련규정에 따라야 하며, 감리전문회사의 확인을 거쳐 사전에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제2항의 본 협약에서 인정하는 설계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정부의 본 사업에 대한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실제 공사량이 증감되는 경우
  - 2. 정부가 설계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를 요청하고 이로인한 공사량의 증감을 인정하는 경우. (단,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사업계획서상 설계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지적사항은 제외)
  - 3. 법규에 따라 총사업비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총사업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④ 위 제3항에 의한 설계변경시 공사량의 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5조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항에 따른다.



### 제 11 조 (실시계획의 승인)

- ① 지상조업장비정비시설B의 시설규모는 부지규모(7,700㎡, 폭 175m × 길이 44m), 건축면적(1,772㎡), 건축연면적(2,353㎡)로 하되, 본 협약 당사자간의 협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단, 정부가 제시한 항공수요를 기준으로 본 사업 신청자가 신청하여 결정된 시설규모에 대한 위험부담은 본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 ② 본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건설교통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 ③ 본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신청 이전에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경유하여 “수축법” 제7조의 제3항에 의거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제 12조 (행정절차 추진)

민간투자법 제16조에 의한 행정절차 이외에 본 사업 추진과 관련된 행정절차는 본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며 건설교통부는 본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는 행정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 13조 (공사기한)

- ① 본 사업의 공사기한은 2000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사유, 정부의 귀책사유등 기타 본 사업시행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 14조 (시설설치 완료기한)

본 사업시행자는 시설사용자와 협의하여 운영개시일 2개월 전까지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을 위한 운영장비의 설치등 시설설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 15조(권한의 위탁)

- ① 정부는 본 사업의 건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위탁한다.
  1. 감리전문회사의 지정
  2. 본 협약 제10조 제3항에 따른 설계변경 승인
  3. 본 사업시행에 관한 준공검사



## 제 19조 (준공 확인)

- ① 본 사업시행자는 완공일 15일전까지 확정설계도면을 작성하여 감리전문회사의 확인을 받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경유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본 사업시행자는 본 시설물의 완공 1개월전까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8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으로부터 예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③ 본 사업시행자는 본 시설물의 완공후 감리전문회사의 감리보고서를 첨부한 공사준공검사 신청서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하며,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준공검사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준공검사 보고서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시는 준공확인필증을 본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본 사업시행자가 지상조업장비정비시설B에 대한 관리운영을 할 수 있도록 미리 본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운영개시일, 최초사용료 기타 필요사항들을 확정하여야 한다.
- ⑤ 본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른 준공확인필증을 교부 받은 후 6개월이내에 본 시설물의 건설과 관련한 공사시행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본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제20조 (임대 및 운영사항)

- ① 본 사업시행자는 지상조업장비정비시설B 본래의 용도외에 타 용도나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

② 지상조업장비정비시설B의 임대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목에 따른다.

1. 본시설물은 임대를 희망하는 관련기관 및 업체 모두에게 공평한 조건으로 임대하여야 하고 임대조건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2. 본 사업시행자는 업체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임대업체 선정기준을 작성하여 실시계획 제출전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본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즉시 본 사업시행자는 실시설계에 임하기전에 임대희망 국내·외 업체를 파악(문서확인)하여 임대조건, 임대료, 기타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가능한 가계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에 반영토록 하여야 하며, 동 사항을 포함한 임대계획을 실시계획 승인신청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4. 위 제1호 내지 제3호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시행자가 본 시설물 전체를 직접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업체 선정기준의 작성·제출, 임대희망업체 파악, 가계약 체결 및 임대계획 제출 등을 예외로 한다.
5. 장비설치 주체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협의하고 가급적 사용자의 의견을 수용하여야 하며, 본 사업시행자가 장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장비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단, 사용기간 만료후 설치된 장비의 처리는 설치자가 자비로 철거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후임 사용자와 계속 사용에 대해 협의 될 경우에는 협의 결과에 따른다.
6. 본 사업시행자는 시설사용자 선정과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보험가입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7. 본 사업시행자는 임대 등 사업계획서 제출내용 이외에 본 시설물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준수하여야 한다.
8. 본 시설물에 대한 본 사업시행자의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시설사용자가 본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시설사용기간 및 당해 영업권은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본 사업시행자는 시설사용자에게 자신의 무상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시설사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지상조업장비정비시설B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목에 따른다.

1. 시설사용자가 영업수행상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건설교통부장관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불응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영업승인의 취소나 철회를 할 수 있으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이를 근거로 본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사용자에 대한 시설사용승인의 취소나 철회를 요구하였을 경우에는 본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본 사업시행자는 동 시설의 관리운영을 함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정한 법적 의무시설(급수, 위생(흡연실), 소화, 전기 및 기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동 시설이용자의 복지 및 편의를 위한 적정규모의 식당과 휴게실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본 사업시행자나 시설사용자는 당해 기본시설물 외에 필요한 추가시설을 설치, 이전, 폐쇄, 철거할 경우에는 사전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본 사업시행자는 사용자가 ICAO규정, 항공법 규정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익자부담 경비원칙에 의하여 경비감독기관이 정하는 소요의 청원경찰을 직접 임용하여 근무배치 및 감독 등의 경비업무를 담당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21조 (유지관리)

- ① 본 사업시행자는 무상사용기간동안 본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시설을 유지보수 및 관리하여야 한다.
- ② 본 사업시행자는 운영개시일 3개월 전까지 유지지침서가 첨부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지보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년 말 다음 년도 유지보수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 4 장 사업수익율 및 사용료

### 제23조 (실질사업수익율)

본 협약에 의한 사용료 등의 산정을 위해 적용할 수익률은 세전 실질수익율 (IRR) 9.58%로 하고 무상사용기간 중 변경하지 아니한다.

### 제24조 (사용료)

- ① 본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라 운영기간동안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징수 방법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관련 제규정을 준용하되 시설사용자와 별도 협약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② 지상조업장비정비시설B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연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본 사업시행자는 매 회계년도에 대한 사용료를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지상조업장비정비시설B의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 제25조 (사용료 및 무상사용기간 조정)

- ① 사용료 및 무상사용기간 조정에 관련 사항은 별첨 부록 1의 함수관계식에서 산정한다.
- ② 제10조(제10조제3항제3호 제외)에 따르는 조정과 공사시행중 또는 완공후에 천재지변, 정부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한 정산을 할 경우에는 무상사용 기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제27조 (불가항력 사유)

협약 당사자의 합리적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사태를 의미하며, 불가항력 사유는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와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구분한다..

① 다음 각호의 사유들은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비정치적 불가항력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로 인정된다.

1. 지진, 홍수, 해일, 화재, 화산폭발,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
2. 전국적 또는 사회산업전반의 파업
3. 정부정책, 경제환경 및 본 사업환경의 전반적인 급격한 변경으로 자금차입 계약(들)의 체결이 불가능하거나 본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수익성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② 다음 각호의 사유들은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정치적 불가항력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로 인정된다.

1. 전쟁 또는 사변, 적국의 침공행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2. 환전 및 해외송금 통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3. 민간투자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개정

## 제28조 (책임부담)

본 사업시행자가 불가항력 사유에 기인하여 본 협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기타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제29조 (불가항력 발생통지)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사유를 알게 된 후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동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30조 (불가항력의 대책협의)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9조에 의한 통지를 수령한 후 지체없이 본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개시하여 해당 불가항력 사유의 치유책 및 이에 대응한 본 협약의 변경 여부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 제 6 장      협약의 종료

### 제31조 (협약의 종료)

- ① 다음의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본 협약을 해지하고,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의 취소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구협약의 별첨 공사에 관한 협약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정부가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2. 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파산 선고가 있는 경우
  3. 본 사업시행자의 주주총회에서 사업시행자의 해산 및 청산을 결의한 경우
  4. 민간투자법 제46조 또는 제47조에 의한 경우. 단, 이 경우 정부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본 사업시행자에게 사전 통지하여 6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② 다음의 경우 본 사업시행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대한 본 협약 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고, 동기간의 만료로 본 협약은 종료된다. 단, 본 협약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본 협약 제30조에 따른 협의 개시후 60일 이내에 본 협약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2. 본 협약 제27조에 정한 사유의 발생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료와 무상사용기간의 조정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본 사업 시행자가 그에 대한시정을 요구하는 통지를 발송한 후 60일이내에 그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자금차입계약이 사전 종료하고 그 종료후 60일이내에 이를 대치할 자금제공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 ③ 본 협약이 위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민간투자법 제46조에 따라 해지되는 경우에 정부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 또는 총선순위채무 중 큰 금액을 사업시행자(관리운영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저당권자. 이하 동일)에게 지급한다.
1. 공사기간중인 경우 본 사업시설물 적정가치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경우 사업이행보증금은 정부에 귀속된다.)
  2. 운영기간중인 경우 별첨부록5에 표시되어 있는 미래순현금흐름을 사업수익률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④ 본 협약이 민간투자법 제47조 또는 위 제2항 제1호에 따라 해지되는 경우에 정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 또는 총선순위채무 중 큰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1. 공사기간중인 경우 본 사업시설물의 적정가치에 해당하는 금액
  2. 운영기간중인 경우 별첨부록5에 표시되어 있는 미래순현금흐름을 사업수익률로 할인한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금액
- ⑤ 위 제2항 제3호 또는 비정치적 불가항력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 또는 총선순위채무 중 큰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1. 공사기간중인 경우 본 사업시설물의 적정가치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2. 운영기간중인 경우 별첨부록5에 표시되어 있는 미래순현금흐름을 사업수익률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⑥ 위 제2항 제2호 또는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 또는 총선순위 채무 중 큰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1. 공사기간중인 경우 본 사업시설물의 적정가치의 95%에 해당하는 금액
  2. 운영기간중인 경우 별첨부록5에 표시되어 있는 미래순현금흐름을 사업수익률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95%에 해당하는 금액
- ⑦ 본조에 정한 본 사업시설물의 적정가치는, 중도해지시점까지 사업시행자가 투입한 총사업비를 해지당시의 가격으로 환산(투입시점부터 중도해지시까지 실제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후, 동 환산액에 사업수익율을 해당기간만큼 적용하여 산출한 연도별 총사업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 ⑧ 본 협약이 위 제1항 또는 제2항 및 제27조에 따라 해지되는 경우에 위 제3항 내지 제6항에 따른 금원의 지급시점까지 본 사업시행자가 대주에 대하여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채무는 정부가 관계법령에 따라 동일 조건으로 인수하거나 대주의 합의가 있을 경우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동일조건으로 이를 인수하게 하기로 한다. (여기서 조건이라 함은 대주와 사업시행자간의 대출 약정서상의 제반 대출조건을 말한다.) 본 제8항에 따라 정부가 본 사업시행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위 제3항 내지 제6항에 따라 정부가 본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금원에서 동 채무액에 상당한 금액을 공제하기로 한다.
- ⑨ 위 제3항 내지 제6항의 경우에 각 그 협의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 시지급금에 대한 본 협약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협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금액을 산정하도록 한다. 본 협약 당사자는 그들이 보유하는 해지시지급금 산정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전문기관의 요청에 따라 즉시 제공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해지시지급금의 산정결과를 본 협약 당사자 쌍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 협약 당사자 쌍방은 전문기관이 산정한 결과에 따라 해당 금액을 인정하기로 하며, 정부는 전문기관의 위 서면통보 후 해당 금액을 본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 ㉑ 본 협약은 본 협약의 규정에 따라 사전 종료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약 제5조에 규정한 무상사용기간 및 운영기간의 만료와 함께 종료한다. 또한, 본 협약이 본 협약의 규정에 따라 사전종료되는 경우에는 위 무상사용기간 및 운영기간도 함께 종료된다.
- ㉒ 본 협약이 무상사용기간 만료로 종료하는 경우 본 사업시행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본 사업시행자는 운영기간 만료일 6개월전에 본 시설물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시설점검을 실시한 후 운영기간 만료일에 지상조업장비정비시설 B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건설교통부에 인계한다.
  2. 위 시설점검 결과 지상조업장비정비시설 B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수리 또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기간 만료전까지 본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그 수리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

## 제 7 장      분쟁의 해결

### 제32조 (분쟁의 해결)

- ① 본 협약의 당사자는 본 협약으로부터 또는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의 또는 분쟁 등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기로 한다.
- ② 제1항과 같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른 상사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이 경우 중재지는 대한상사중재원 소재지로 한다.



## 제 8 장 비 밀 유 지

### 제33조 (비밀유지)

- ① 본 협약 당사자 쌍방은 본 협약의 종료 여부에 불구하고 타방 당사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본 협약의 내용이나 본 협약과 관련하여 지득한 타방 당사자의 업무나 운영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제1항에 의한 제한은 아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현재 또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공지의 사실이 된 정보의 공개
  2. 법에 의하여 그 공개가 요구되어지는 정보의 공개
  3. 재판, 중재 또는 행정절차에 따른 정보의 공개
  4. 정보 공개 당사자의 법률자문 또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 제 9 장 기 타

### 제34조 (자금의 차입등과 정부의 협조)

건설교통부는 본 사업 수행에 있어 본 사업시행자가 대주단과의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자금차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본 협약의 주요내용을 변경하는 등 주요사항에 대한 대주단의 요청에 협조하기로 한다. 건설교통부는 필요한 경우 산하기관(인천국제공항공사등)으로 하여금 대주단의 요청에 협조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 제35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본 협약 내용 중 시설사업기본계획과 상이한 사항은 본 협약 내용에 따라 동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제36조 (공사에 관한 협약)

공사에 관한 협약사항은 구협약 별첨 "공사에 관한 협약" 제19조 제8항까지와 같다.

### 제37조 (준거법)

본 협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하여 규율되고 해석된다.

### 제38조 (언어)

본 협약은 한글본을 정본으로 한다.

### 제39조 (본 협약의 승계)

본 사업시행자가 법인으로 설립되는 경우 본 협약상의 본 사업시행자의 모든 지위 및 권리와 의무는 동 법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본 사업시행자는 그 승계를 위한 법적절차를 밟도록 하고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건설교통부는 이를 승계한다.

### 제40조 (서면통지)

① 각 협약당사자에 대한 통지는 상대방의 수취 확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이루어진다.



## 부록 1. 수익률과 사용료의 산정 공식

사용료 산정은 아래의 함수관계식을 기준으로 한다.

$$\sum_{t=1}^n \frac{CC_t}{(1+r)^t} = \sum_{t=n}^N \frac{(OR_t - OC_t)}{(1+r)^t}$$

여기서,

$n$  : 시설의 준공시점

$N$  :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운영기간의 종료시점

$CC_t$  : 시설의 준공을 위해 매년도 투입되는 비용

다만, 정부재정지원 금액은 제외

$OR_t$  : 매년도 운영수입

$OC_t$  : 매년도 운영비용

$r$  : 본 사업의 실질수익률(IRR)

# 공사에 관한 협약

## 제1조 (건설사업이행보증)

본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에 따른 건설사업이행보증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총 사업비에서 체세공과금, 영업준비금, 이윤 및 부대비중보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사업이행보증금(현금,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을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납부 하여야 한다.

## 제2조 (지체상금의 납부)

- ① 본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본 사업의 완공기일(본 협약에 의한 연장기일 포함)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는 경우, 본 사업시행자는 그 실제 완공일까지 미완공분의 공사비를 기준으로 1일당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설교통부장관이 발행한 납부고지서에 따라 지체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실시협약 제13조에 따라 공사기간의 연장이 인정될 경우 지체상금은 연장된 완공기한 이후부터 부과한다.

## 제3조 (공사의 도급)

- ① 본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자(들)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본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공랑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① 공항공사사장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선정된 감리전문회사와 계약을 체결토록 하며 사업시행자는 공항공사의 당해공사 감리 시행방안에 따른다.
- ② 공항공사사장은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본 지상조업장비정비시설“B”의 공사에 대하여 민간투자법에 따른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업무수행을 감독한다.
- ③ 본 사업시행자는 공항공사사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매 분기의 감리비를 그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첫째 날까지 예치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공항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공항공사는 공사감리실적에 따라 감리비를 감리전문회사에 지급하고, 그 결과를 본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한다.

#### 제7조 (공정보고)



- ① 본 사업시행자는 본 지상조업장비정비시설“B”의 공사에 대하여 합리적인 공정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매 분기별 공사추진현황을 공항공사사장을 경유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본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공사일정에 따라 본 사업의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8조 (기성검사)

본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의 공사실적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감리전문회사에 의한 기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감리전문회사는 기성검사 완료후 지체없이 본 사업시행자와 공항공사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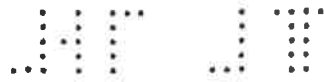
- ⑧ 공항공사는 사업시행자가 시설물 건설을 위한 자재수급과 공사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공항공사에 요청할 경우에는 가급적 지원하여야 한다.
- ⑨ 본 사업시행자는 운영개시전 공항공사의 관리기준 공정계획에 따라 전체 시설물과의 종합시운전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⑩ 본 사업시행자는 실시설계시 보안 및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국가 보안목표 ‘가’급 시설인 공항시설에 대한 설계이므로 조사내용, 중간결과 및 최종결과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⑪ 공항공사는 민자사업자 및 민자사업의 시공자에 대하여 품질보증계획의 이행 상태 및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품질보증감사 및 필요시 공사현장에 대한 품질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 ⑫ 민자사업자는 사업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품질보증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⑬ 민자사업자는 민자사업의 설계자 및 시공자가 과업수행권에 품질보증계획을 수립케 하고 이를 14일 이내에 공항공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⑭ 본 사업시행자는 설계시 관련 전문가로 “설계자문단”을 구성하여 최소3회이상의 자문을 받아 설계하여야 하며, 실시설계 승인신청시 자문결과 및 조치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⑮ 설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민자사업시행자가 공항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련 용역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 10조 (부지계획 및 시설물 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

- ① 시설물 등의 배치는 장래확장을 고려하여 배치하되 시설물의 특성과 용도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 ② 민자유치시설 건물 부지내의 공공시설(도로, 주차장, 녹지 등) 지역은 제반 설계도서 및 지침에 부합되도록 사업시행자가 시행(설계포함)하여야 하고 단계별로 확장이 용이하고 확장시 기본시설 운영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도로는 부지경계선 까지 공항공사가 시행한다.

**제11조 (토목 및 옥외시설에 관한 사항)**

- ①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을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② 모든 설계내용은 공항공사에서 실시하였거나 현재 시행중인 각종 실시 설계와 부합되도록 하고, 그 수준이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 ③ 일반구조물의 설계하중은 기능에 따라 공항공사의 협조를 받아 결정한다.
- ④ 도로 및 주차장 설계에 있어서 공항공사에서 완료한 도로망계획과 연계한 도로 체계, 포장공법, 보차도 유형 등과 같은 제반 설계조건에 적합하게 설계하거나 보다 좋은 설계 및 시공방법을 제시할 경우에는 공항공사와 협의를 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⑤ 공항전지역의 배수시설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배수계획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⑥ 배수망도 작성시 관련 지하구조물 시설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배수망도에 관련 지하구조물 시설을 삽입하며, 설계는 공항공사에서 기 계획된 배수망까지 민자 사업자가 설계한다.
- ⑦ 부지내의 공공부문(울타리, 조경시설, 옥외환경시설물, 표지판 및 그래픽 등)은 공항공사에서 작성한 설계지침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 ⑧ 주차장은 건물규모에 따른 법정 주차대수 이상의 규모로 설계하여야 한다.

- ⑨ 사업지역은 준설 및 산토매립지로서 식물생육에 부적당한 환경인자를 갖고 있으므로 식물생육이 가능한 식재지반을 조성하고 내염성이 있는 수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 ⑩ 공동구를 제외한 본 시설의 상하수도 및 중수도는 공항공사에서 부지경계선 외곽 3M까지 설치하고, 지선공동구 설치시에는 기발주한 공사의 간선공동구 계획에 맞추어 본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지선공동구를 설치하여 자체수급라인을 연결처리하고 규모 및 용량은 사전에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 ⑪ 본 시설의 에너지공급(전기)은 공항지역에 건설되는 변전소 등을 통하여 공급받도록 하되, 냉난방 공급을 위한 동력동(기계실)은 사업시행자가 별도 건설하여 공급하여야 하며, 공항공사에서 설치하는 공동구와 접속방법은 사전에 공항공사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 ⑫ Airside지역과 Landside지역에 공존하는 시설은 보안기준을 충족하도록 경비보안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 12조 (건축시설에 관한 사항)

- ① 단위건물에 대한 외관은 건물별 특성과 부합되게 하고 공항전체 이미지와 연계되도록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② 공항지역내 설계, 시공되는 민자유치시설물에 있어 각 시설물간의 유기적인 조화와 인천국제공항만의 독특한 Identity를 유지하기 위한 환경디자인 요소는 공항공사에서 마련한 “민자유치시설 설계기준 및 지침서”(이하 ‘지침서’라 함)의 내용에 따른다. 지침서의 주요내용은 외부 Signage & Graphics 및 광고물, 외부가로시설물, 예술조형물, 외부색채계획으로 구분된다.
- ③ 건물에 대한 설계를 시행함에 있어 실시계획 승인신청시 소요면적 계산서(Space Program) 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건물의 구조는 매립지반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항공사가 제시하는 자료를 근거로 설계하며 부족할시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실시한 완벽한 지반조사를 근거로 설계하고, 특히 발생가능한 지진에 충분히 대처하도록 본 설계에 반영할 기준을 수립한 후 실시설계토록 한다.
- ⑤ 건물의 외벽 및 지붕구조는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하고 조류의 서식이나 피난 방지 등을 고려한 구조로 실시설계하여야 한다.
- ⑥ 건물 내,외부의 마감은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비용이 최소화할 수 있는 재료가 되도록 선택하되 공항전체 미관을 저해하는 재료의 선정은 지양하여야 한다.
- ⑦ 건물 외부벽체에는 반사 및 전파방해가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⑧ 설계를 시행함에 있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⑨ 콘크리트 공사와 금속공사에 대한 설계시 염해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마감외장재 선정시 염해 방지대책을 강구한 후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 13조 (기계시설에 관한 사항)**

- ① 인천국제공항은 집단에너지 및 청정에너지사용 고시예정지역임으로 고시 내용에 부합되도록 에너지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계설비의 건설 및 운영 등에 차질이 없도록 공항공사에서 시행하는 옥외시설 및 관련설계용역에서 요구할 경우 유틸리티 소요량, 입출구지점, 환경, 유속, 유량, 공동구내 유틸리티 배치방안 등 제반자료를 제공하고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③ 건축물 등의 실내온도, 환기, 습도, 기류, 청정도, 등의 조정이 가능토록하여 건물의 기능 및 특성에 적절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 공기조화 설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급·배수 설비는 공항공사에서 시행중인 급수공급 및 배수계획을 고려하고 화장실 세정용수 등은 중수도 공급방안에 따라 건물내부 중수공급배관이 별도 설치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항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⑤ 생활하수 및 구내식당에서 배출되는 식품폐수는 중수도처리장으로 유입토록 하되, 식품폐수에 포함되어 있는 고형물 및 유분을 제거하는 자체처리시설을 거쳐 분류식 하수관거(오수관거)에 연결하며 각 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 및 수량을 측정하여 수질성적서를 공항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도시가스공급배관은 주공급관으로부터 본사업시행자가 분기하고 유지보수하여야 하며, 이에대한 세부시행사항은 인천도시가스 및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단,주공급관이라함은 공항공사와 인천도시가스가 협의완료된 가스관으로써 도면을 참조할것
- ⑦ 건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수거시설 및 처리방법에 관하여는 공항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⑧ 정비폐수 및 세차폐수는 공항공사 폐수처리시설에 유입되도록 하되, 폐수관로는 부지경계선 외곽 3M까지는 공항공사에서 시행하고 민자사업부지내의 관로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한다. 사업시행자는 폐수이송용 펌프 및 유량계를 설치하고 폐수외의 다른 이물질로 인한 관로의 막힘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하며, 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는 추후 공항공사와 상호 협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초기강우는 사업시행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 ⑨ 본 사업시행자는 건축법 제58조 규정에 의해 건물의 주용도상 비상급수 및 중수탱크를 자체 또는 그룹별로 설치하고 건물에서 요구되는 양수장치를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⑩ 냉·난방에 필요한 열원은 열병합발전소에서 공급받아 사업시행자가 자체 동력 동(기계실)을 건설 건물이 요구하는 냉난방 유틸리티를 생산 공급하여야 하며, 상세한 내용에 관하여는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설계 하여야 한다.
- ⑪ 본 사업시행자는 추후 공항공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될 열공급 배관시설 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 ⑫ 중온수·중수·급수시설은 공항공사에서 사업 부지 경계선 외곽 3m까지 시행하고, 본 사업시행자는 유틸리티를 공사의 시공완료시점부터 본시설로 연결되는 배관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량기를 설치하여 원격검침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성과 연결은 사업시행자가 시행하고, 설치장소, 연결지점 및 방법등은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건물 내·외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⑬ 본 사업시행자는 각종 유틸리티의 사용료를 공항공사와 협의후 납부하여야 한다.(단, 중온수 사용료는 열병합 사업자시행자, 공항공사, 본 사업시행자가 협의후 결정)
- ⑭ 본 사업시행자는 냉방을 위한 CFC계 냉매와 소화설비를 위한 HALON가스 사용을 지양하고 오존파괴지수 및 지구온난화 지수가 낮은 대체물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14조 (전기시설에 관한 사항)**

- ① 전력공급은 공항공사에서 건설하는 배전변전소를 통하여 공급받도록 하며, 모든 전기설비는 공항기능의 충족성, 에너지절약 계획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공항공사에서 시행하는 인천국제공항의 전력시설설계와 연계성이 있는 부분은 이를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② 본 사업시행자는 동측관리지역 지역배전시설 (주변전소 A구내)에 공항공사가 설치할 특고압 배전용 차단기(22.9kV) 2차측으로부터 상시(A s/s source) 및

비상 (B s/s source)선로 2회선을 인출하여 지상조업장비 정비시설의 구내 변전소까지 전력선로를 구성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측 수전설비에는 여타 모듈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인출용 다회로개폐기(SF6 가스절연 부하개폐기 25.8KV,2조)를 설치하여야 하고, 또한 전력 계통구성 및 확장성을 감안하여 증설예상부하에 대한 예비 관로를 인출가능 부분까지 포설하여야 한다.

- ③ 조명설비는 건물의 기능 및 분위기를 고려한 조명방식, 광 원, 조명기구를 선택하여야 하며, 특히 옥외에 설치되는 조명기구(가로등, 주차장등, 보안등 등)는 전체 옥외조명시설 및 주변 환경과 조화가 되도록 공항공사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하여 설계하여야 하고, 에너지 절약을 고려한 조명자동 제어 방식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설계시에는 우선적으로 단계별 전력수요를 건설 공사에 제출하여 공항공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관련 설계 및 인천국제공항 단계별 전력공급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여야하며, 자체 수전설비는 단계별 수요에 적합한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 ⑤ 건물 설비중요도 및 전원공급환경을 검토하여 필요시 상용전원외에 예비 비상발전설비 및 무정전전원공급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고려 하여야 한다.
- ⑥ 공항공사가 계획하는 인천 국제공항 전력 통합감시 및 제어시스템 구축과 연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설의 전력감시 정보 및 원격 검침정보가 공항공사시스템에 제공되어 져야하며, 관련시설의 구성은 공항공사와 충분히 협의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⑦ 전력공급 및 공사시행 구분에 있어서 책임분계점은 동측관리지역지역 배전시설 특고압 배전용차단기(22.9kV) 2차측으로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건물내 특고압수전반까지의 관로 및 케이블을 포함하여 사업 시행자가 시행하여야 하고, 전기사고의 과급방지 및 계통 보호협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전력사용량 계량을 위한 장치(MOF 및 원격 검침용 DM)는 본사업시행자측 수전설비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⑧ 공항종합정보통신센터(AICC), 공항소방대 등에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운영정보, 경비보안, 화재탐지정보 등은 본 시설 설계시 공항공사와 긴밀한 협조하에 건설공의 통신망에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단, 공항공사의 각종 통제실로부터 지상조업장비 정비시설 건물외벽 3M 까지의 LAN망설치는 공항공사가 시행한다.
- ⑨ 건설기간중에 공사용 임시전력을 공항공사가 선투자한 배전선로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전기수용용량 및 사용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시설분담금을 공항공사의 청구에 의해 납부하여야 한다.

#### 제 15조 (통신, 전자시설에 관한 사항)

인천국제공항의 모든 정보, 통신 및 자동화시스템은 공사에 의해 통합 구축 및 운영될 것이므로 본 사업시행자는 다음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단, 각 법인의 고유한 정보, 통신 및 자동화시스템은 통합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① 기본적인 통신선로 및 관로, 적용되는 통신시스템 설비는 공항공사의 관련설계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② 통신망 구성에 있어서는 국제통신연합(ITU)의 권고 및 전기통신기술기준, 정보통신부 고시사항에 적합하여야 하고, 통신망 구성을 위한 통신선로 및 관로 구성 등 각 설비는 공항공사의 관련설계 내용에 적합하게 하여 공항공사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각 주요시설간의 기간망(Infrastructure-Network) 과의 인터페이스는 비동기 전송방식(ATM) 적용을 기본으로 한 광섬유케이블(Optical-Cable)로 연계 설계하여야 한다.
- ④ 주배선반(MDF), 중간배선반(IDF)에 관련된 시설은 유지보수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배선은 통합배선 방식으로 종합정보통신망(ISDN)을 적용할 수 있는 시설로 설계하여야 한다

- ⑤ 본 시설에 인입되는 관로 등 추가시설은 본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간선부분의 선로배선은 Cable Tray를 설치하여야 하고 무선설비 (TRS, PAGING, 무선 LAN)를 사용하기 위한 사무실 지역의 Antenna 설치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⑥ 방법 및 보안에 관련된 보안설비(CCTV,ACCESS CONTROL등) 및 비상방송 설비는 공항공사의 타 시스템과 연계 가능토록 구성하여야 하며, 설계에 따른 제반 사항은 공항공사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 규정은 공항보안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단, 공항공사의 각종 통제실로부터 지상조업장비 정비시설 건물 외벽3M 까지의 LAN망 설치에 공항공사에서 시행한다.
- ⑦ 민자사업자는 설계 및 시공 또는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 계기착륙시설의 CAT-III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계 시공하여야 하며 공항공사의 설계지침에 따라야 한다.
- ⑧ TVOR의 자폐 영역을 최소화하고 인천국제공항 남서쪽 영역의 수용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상조업장비 정비시설의 높이는 공항공사의 설계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 16조 (종합정보통신센터(AICC)에 관한 사항)**

- ① 본 사업시행자는 본 시설에서 발생하는 공항 관련된 정보는 공항의 지능화를 위해 정보의 공유화, 데이터의 분산화, 시설관리의 효율화, 공항업무의 능률화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② 본 시설에서 “공항정보종합처리시스템”과 연계 가능한 정보(항공서비스, 지상조업장비, 계류장관리, 장비관리등) 상호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공항공사에서 정하는 기술기준, 표준 등을 적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③ 공항내 분산된 건물 및 지상조업장비 정비시설 상호간 적정정보(데이터, 영상, 음성)의 전송 및 교환은 “공항기간 통신망”을 이용하는 방안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단, 지상조업장비 정비시설 건물외벽 3M 까지의 LAN망설치는 공항공사에서 시행한다.
- ④ 공항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시설에 설치되는 모든 방재 및 방범정보는 “공항안전관리시스템”에 연계될 수 있게 설계하여야 하며, 건물내 설치되는 방재, 방범시설은 공항공사의 관련 방범, 방재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설계하여야 한다.
- ⑤ 공항공사는 필요한 경우 시스템 통합을 위하여 종합정보통신시스템 구축사업자(MSI)로 하여금 정보통신 및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사업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17조 (소방시설에 관한 사항)**



- ① 모든 소방시설은 소방법 및 국내외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② 소방시설 설계시 소방협회, 화재보험협회, 인천광역시 소방담당등 관련기관의 자문을 득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③ 공항공사의 소방시설 통합감시체계와 연계되도록 시스템을 구성·시행하여야 한다. 단, 공항공사의 각종 통제실로부터 지상조업장비 정비시설 건물외벽 3M 까지의 LAN망설치는 공항공사에서 시행한다.

**제 18조 (환경오염방지시설에 관한 사항)**

- ① 본 사업시행자가 환경오염배출시설을 설치시에는 관련법규 및 공항공사가 제시하는 설치기준에 따라야 하며, 계획수립 및 설계시 공항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② 본 사업시행자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인천국제공항건설 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동 내용이 적극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 19조 (도면작성 및 제출)

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설계, 시공은 물론 운영과 유지보수에 이르는 전과정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시행, 관리하기 위하여 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료를 통일화하고, 이를 Data Base로 구축·관리하고 있으므로 본 사업시행자는 공항공사가 제공하는 설계통합기준서와 다음 사항에 의거하여 설계도면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① 동 기준서에 없거나 신규 발생사항에 대하여는 공항공사와 사전 협의한다.
- ② 본 사업시행자는 도면을 작성함에 있어 CAD System(Auto CAD)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하드카피와 함께 동자료를 전자파일 형태(CD-ROM, ZIP등 저장매체)로 제출하되 동자료는 공항공사의 CAD System (공항공사는 Auto CAD Release12, 14, 고은글 4.0 사용중임)과 호환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③ 본 사업에서 생산하는 모든 도면은 벡터자료로, 외부 참고자료는 라스터 또는 벡터자료로 제출하되, 벡터자료는 \*.DWG, \*.DXF 화일 포맷으로, 라스터자료는 TIFF 화일 포맷으로 생성하여야 한다.
- ④ 지형도 입력사항 및 기준은 국내에서 사용중인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건설교통부령 제17호:'95.5.29)에 의거 표준코드와 표준도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⑤ 도형 데이터는 도면의 종류와 레이어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 ⑥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보고서는 보고서와 함께 동 내용을 수록한 전자파일(CD-ROM, ZIP등 저장매체에 수록)을 제출함을 원칙으로하되, 공항공사에서



